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

1. 투자신탁의 명칭 :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리더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규약 변경 사유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 93 조제 3 항제 6 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 81 조제 3 항)
- 수익자총회 관련 문구 추가
- 클래스 C-E 판매보수 인하

3. 집합투자규약 변경시행일 : 2018 년 8 월 24 일

4. 집합투자규약 변경 주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생략> ②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④<생략>	①<현행과 동일> ②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u>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u>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④<현행과 동일>
제37조(수익자총회)	
①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⑪<생략>	①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u>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u>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② ~⑪<현행과 동일>
제39조(보수)	
①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① ~②<현행과동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6. <생략> 7. 클래스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8.4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1.0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7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6. <현행과동일> 7. 클래스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8.4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7.5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7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9.<생략> <추가>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9.<현행과 동일>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018 년 8 월 20 일에 정정 신고 제출하였던 아래 사항에 한하여 취소하고자 함

1) 모투자신탁 펀드명칭 변경

2) 동일한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리더스 증권자투자신탁(미달러)[주식])